제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보고안건 제1호

## 성실납부정보 기반 신용점수 향상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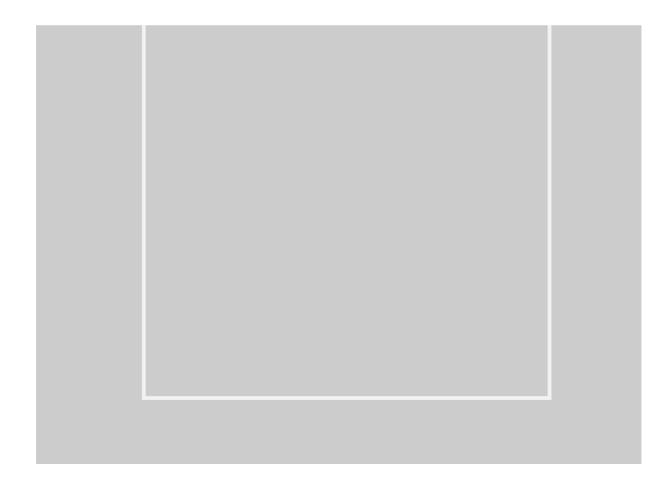
-국민연금·건보료·전기요금 납부정보로 신용점수 가점 부여방안 연구-

2021. 7. 22.





# 요약



## 성실납부정보 기반 신용점수 향상 [요약]

◈ 성실납부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의 보다 공정한 신용평가를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지원할 필요

### 성실납부정보를 활용하려는 이유

- □ 개인신용평가회사(CB)는 금융정보(예 : 대출 상환/체납)와 비금융정보(예 : 세금 납부/체납)를 수집·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용점수(1~1,000점)로 계산
  - 금융정보(성실납부·체납 모두) 및 비금융정보(체납)는 CB社에 자동 전달 되나, 비금융정보(성실납부)는 CB社에 자동 전달되지 않는 상황
  - **개인이 직접** CB社에 비금융분야 **성실납부정보를 제공**하여 신용 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,
  - 자발적인 제출에 의존하다 보니 **일부만 혜택**을 보고 있고("20년 기준 약 130만명, 전체의 2.7%), 자료의 한계로 **가점 부여 수준**도 **제한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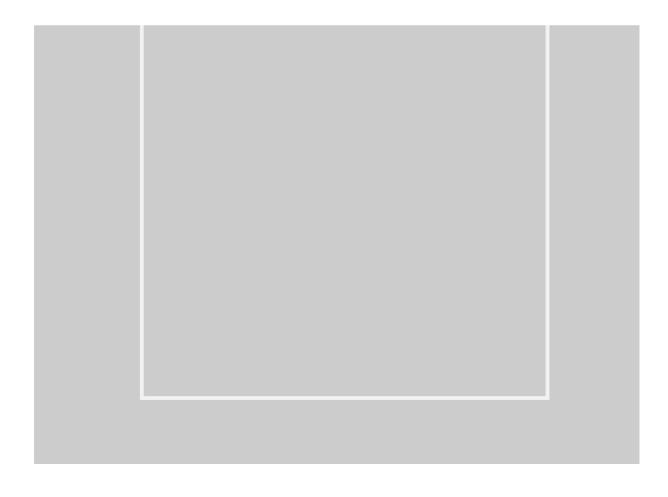
### 성실납부정보 유용성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

- □ 4차위·복지부(건보, 연금공단)·산업부(한전)·금융위(신정원, CB社) 공동 으로 **실무협의체**를 구성·운영('21.7월~'22.3월)
  - 최근 3년간의 성실납부정보(건보료, 연금, 전기요금 등)와 신용정보를 결합분석하여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, 가점 부여 방안 마련
  - **납부금액**과 **납부여부** 데이터 활용의 차이, 세대단위 납부(건보료) 및 건물단위 납부(전기요금) 등 데이터 특성에 따른 차이도 함께 분석
  - **외부 전문기관**을 통해 가점 부여 방안 연구결과의 적정성을 **검증** 하고, 성실납부정보의 **오남용 방지 대책**도 마련
- □ 공동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**활용방안을 구체화**한 후, (가칭) **성실납부 정보 활용계획(안)**을 4차위 데이터특위에 보고('22.1분기)

<sup>①</sup>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들이 **신용점수 향상에 얼마나 기여**할 수 있는지 **공동연구**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('21.下), <sup>②</sup>이후 **활용방안 마련**('22.1Q)



## 본 문



## 순 서

I. 성실납부정보를 활용하려는 이유 ······	1
Ⅱ. 그간의 추진 경과	2
Ⅲ. 성실납부정보 유용성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	3
Ⅳ.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	6
【붙임1】관련법령 :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	7
【붙임2】국민연금 성실납부와 불량률 간 상관관계 분석 …	9

## I. 성실납부정보를 활용하려는 이유

- □ 개인신용평가회사(CB\*)는 금융회사·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·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용점수(1~1,000점)로 계산하여 금융회사에 제공
  - \* Credit Bureau / 국내 대표 CB: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 또는 KCB, NICE평가정보(주) 또는 NICE
  - **금융회사**는 CB社로부터 받은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자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특정 개인에 대한 **대출 가능여부**, **금리 수준** 등을 결정
- □ CB社가 활용하는 정보는 크게 **금융정보**와 비금융정보로 구분
  - 금융정보의 경우, 긍정적(예: 대출상환) · 부정적(예: 체납) 정보 모두 해당금융행위 발생 즉시 관련 정보가 CB社로 자동 전달, 신용평가에 반영
  - 비금융정보의 경우, 부정적 정보(예: 국세 체납)는 CB社로 자동 전달되는 반면, 긍정적 정보(예: 건보납부)는 CB社로 자동 전달되지 않음
  - ⇒ **청년층** 등 금융이력 부족자(1,197만 명)는 **부정적 정보 위주**로 평가받는 상황

구분	긍정적 정보(성실납부)	부정적 정보(체납)	
금융정보	- CB社 자동 전달 - 대출금 상환이력 신용카드 사용이력 등	- CB社 자동 전달 - 대출금 체납 신용카드 체납 등	
<b>비금융정보</b> (또는 <i>공공</i> 정보)	- CB社 자동 전달 X -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납부 전기요금 납부/전력사용량 통신요금 납부	- CB社 자동 전달 - 국세 체납 고용·산재보험료 체납 지방세 체납 전기요금 체납 등	

- □ 한편, 개인이 직접 CB社에 성실납부정보(또는 긍정적 공공정보)를 제공 하여 신용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('16~)
  - CB社 홈페이지(KCB: allcredit.co.kr, My데이터 메뉴 / NICE: credit.co.kr, My부스트 메뉴)에서 직접 등록하거나,
  - 핀테크 업체 서비스(**카카오페이**, 네이버페이, 뱅크샐러드, 토스 등)를 통해 성실납부정보를 **CB**社로 **전달**하는 방식으로 신용점수 상향 가능
  - ⇒ 자발적 제출이다 보니 일부만 혜택,\* 자료 확보·분석 한계로 가점 부여도 제한적
    - \* 가점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'20년 기준 약 130만 명으로 전체의 2.7% 수준
  - ◈ 성실납부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의 보다 공정한 신용평가를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지워할 필요

## Ⅱ. 그간의 추진 경과

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'09년부터 시작되었으나, 아직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

- □ ('97년~) 국세징수법 등 개별법령을 통해 세금, 고용보험료 체납 등 비금융분야 부정적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
- □ ('09년)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에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를 신용 정보원에 집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  - 이후 관계기관 간 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중단 (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, 성실납부정보의 유용성 및 활용 시 안전성 등에 이견)
  - 신용정보법 제23조(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) ②신용정보집중기관이 [공공기관]의 장에게 (중략)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[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, 한국전력공시법 등]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-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9조(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) ② (중략) [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,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 요금 납부 정보]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□ **('16년) 개인이 직접** CB社에 **성실납부정보\***(또는 긍정적 공공정보)를 제공하여 신용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
  - \*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, 공공요금(전기, 수도, 가스), 통신요금 등
- □ ('20년) 감사원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1,100만여 명의 금융이력 부족자들이 신용등급 개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,
  - 금융위에 우량 공공정보를 집중·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
    - ※ 신용정보법 개정('20.8월 시행)으로 공공기관이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용정보집중기관(신용정보원)에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해짐
  - ◎ 금융이력 부족자(Thin-filer) : 최근 3년 내 카드 사용이력 및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자
    - 전체 평가대상 4,803만 명 중 1,197만 명, 이중 청년층 412만 명('20, KCB 기준, 단위 : 만명)

구분	20세 미만	20~ 24세	25~ 29세	30~ 34세	35~ 39세	40대	50대	60대 이상	합계
전체	105	355	413	394	443	918	926	1,249	4,803
금융이력부족자	98	206	114	92	82	128	124	353	1,197

## Ⅲ. 성실납부정보 유용성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

①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들이 **신용점수 향상에 얼마나 기여**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·기관 **공동연구**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, ②이후 **활용방안 마련** 

- ※ '21.5.6, 5.7, 5.28, 6.17, 7.8, 4차위·복지부·산업부·금융위 등 업무협의를 통해 주요사항 논의
- ① (실무협의체) 관계부처·관계기관 담당자로 실무협의체를 구성· 운영하여 공동연구 관련 현안사항 공유 및 해결 추진
  - (구성) 4차위(데이터기획관, 데이터성과창출팀장), 복지부(보험정책과장, 국민연금정책과장), 산업부(전력시장과장), 금융위(금융데이터정책과장), 건보, 연금공단, 한전, 신정원, KCB, NICE 등
  - (운영기간) 2021.7월 ~ 2022.3월 / 수시
- ② (기관별 역할) 복지부(건보, 연금공단) 및 산업부(한전)는 성실납부정보 유용성 검증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,

금융위(신정원, CB社)는 신용평가 모형 개발 등을 통한 연구 진행, 연구 결과는 관계부처·기관이 공동 검토

- ※ 상기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부처 기관 자체 부담
- ③ (정보제공 범위) 성실납부정보 유용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 제공
  - (종류) 복지부/건보 : 건강보험료 월별 납부금액

복지부/연금 : **국민연금 월별 납부금액** 

산업부/한전 : 전기요금 월별 납부금액, 월별 전력사용량

- → **통신요금** 납부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을지 통신사 **추가 협의** 진행
- (규모) 100만 건\*(전국민 약 2%)의 유효데이터(결합분석이 가능한 데이터)
  - \* 지역·연령·소득·성별 등을 고려, 통계적 유의성 확보 (신용정보와 결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결합이 되는 정보주체 수 기준 100만 건 제공)
- (기간) 최근 3년 데이터 제공(정보제공 시점 1년 전 기준)
- ④ (연구 절차 및 방식) ①사전 협의 → ②정보 전달 → ③가점 부여 방안 연구 → ④연구결과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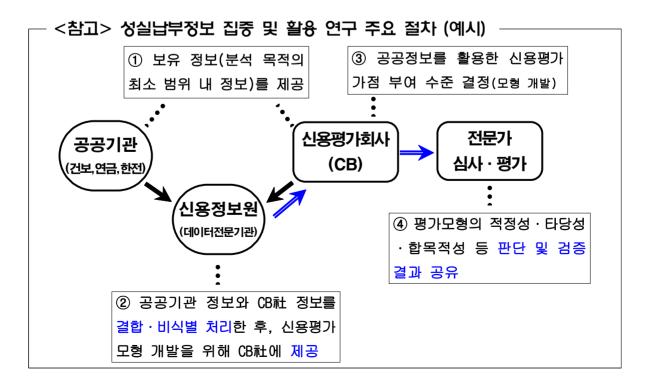
- ① (사전 협의) 담당자 지정, 결합키 생성 방법 논의, 안전한 정보 전달 방식 확정, 결합전문기관 일정 논의 등 필요사항 사전 협의
- ② (정보 전달) 건보·연금·한전 → 신정원
  - 데이터 외부반출 부담 경감을 위해, 결합대상 정보를 확인하여
    미리 결합률을 도출한 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전송

#### ◎ 미리 결합률을 도출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전송하는 방안 예시

- 신정원, 사전 결합 확인용으로 n배수 후보 매칭키를 추출하여 건보·연금·한전에 제시
- 건보·연금·한전, 결합이 가능한 매칭키 및 샘플링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보조정보를 제공 (예 : 건보 직장가입자/지역가입자, 연금 사업장가입자/지역가입자/임의가입자 등)
- 신정원, CB社와 협력하여 통계분석에 적절한 샘플링 후보 도출, 이후 최종 샘플링 후보에 해당하는 매칭키를 건보·연금·한전에 전달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정보를 전달 받음
- ③ **(가점 부여방안 연구)** 신정원은 제공받은 정보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결합하여 CB社에 제공하고,

신정원 및 CB社는 성실납부정보와 연체 간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를 활용한 가점 부여 방안 제시

- ④ (연구결과 공유) 연구 결과를 4차위 및 각 부처·기관과 공유\*
  - \* 다만, 연구결과의 대외 공개 범위는 추후 공동연구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



- 5 (추가 분석 진행) 추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실납부정보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는 분석결과 제시
  - ① '월별 납부금액'과 '월별 납부여부' 정보를 기준으로 각각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
  - ② 건강보험료(지역가입자의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), 연금 보험료(납부의무가 없는 납부예외자 또는 적용예외자인 경우), 전기요금(전기 사용계약 당사자와 실사용자가 상이한 경우 등) 특성이 연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
  - ③ 사용자 신청기반 정보 제공과 일괄 정보 제공 간 효과성 비교
- ⑤ (외부 검증) 가점 부여 방안(평가모형)의 적정성·유용성 등에 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\*의 검증을 실시하고, 이때 건보·연금·한전의 전문가도 검증 논의에 참여
  - \*「신용정보법」제26조의3의 "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" 활용 (학계 및 연구계 3명, 금융계 1명, 법조계 1명, 소비자 보호 전문가 1명으로 구성)
- 7 (오남용 방지) 성실납부정보의 오남용 방지 대책을 연구결과에 포함
  - CB社가 성실납부정보를 신용도를 높이는 **가점부여 용도로만 활용** 토록 제한하고, 이를 위반 시 정보제공 중단 및 제재 조치 추진
    - (예) CB社가 신정원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 작성하는 신용정보 제공·이용 확약서에 준수사항 및 제재 조치 서약

#### ◎ (참고사례) "신용정보 이용계획" 관련 정보 이용 확약서

- (준수사항) 신청기관(CB)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'금리정보'를 제2금융권 이용 고객의 신용차별 완화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, 신청기관 외의 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제재 조치) 신청기관이 <u>본 확약서를 위반한 경우</u> 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<u>정보(금리정보 포함)의 제공을 제한 또는 중지</u>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원에 발생한 <u>모든</u> 손해는 신청기관이 부담한다.

## Ⅳ.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

#### 〈 기대효과 〉

- □ 공공요금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, **금융이력이 부족**하더라도 납부이력에 따라 **신용점수 가점**을 부여받아 금융접근성 향상
  - 자발적 제출에 의존하는 현재와 달리, 성실납부정보가 집중·활용 될 경우 보다 충분한 자료 분석이 가능해져 가점폭 확대도 예상

#### -< 신용점수 가점부여 효과 예시 >-

- (적용 전) 올해 대학을 갓 졸업하고,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A씨는 신용점수가 685점으로 2,000만 원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 2금융권 (저축은행)에서 15%의 금리로 돈을 빌려 연간 300만 원의 이자를 부담
- (적용 후) 국민연금 성실납부 이력이 반영되어 신용점수가 720점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A씨는 1금융권(시중은행)에서 6%의 금리를 적용받아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3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어 연간 180만 원을 절감
- □ 성실납부정보를 활용한 **대안 신용평가 모델**\* 개발 활성화 기대
  - \* CB社는 통신요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통신스코어를 개발하여 금융회사에 제공중 →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통신스코어가 높은 경우 대출을 승인하는 여신상품 출시(통신스코어 적용 후 여신승인률 7.4%p 증가, 불량률 1.1%p 감소)

### 〈 향후 추진일정 〉

- □ 성실납부정보 기반 신용점수 향상(안) 4차위 데이터특위 보고 : '21.7월
- □ 성실납부정보 유용성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: '21.하반기
- □ 성실납부정보 활용 관련 **신용정보법령 개정** 필요사항 검토 : '21.하반기
  - \* 성실납부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구체적 방안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개정안 마련 등(금융위)
- □ 공동연구 결과 검토 및 활용방안을 구체화한 후, (가칭) 성실납부정보 활용 계획(안)을 4차위 데이터특위 보고 : '22.1분기

## 붙임1 관련법령: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

#### <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>

#### 제23조(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) ① 삭제

-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다.
  - 1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- 2.「개인정보 보호법」 3.「국민건강보험법」4.「국민연금법」
- 5. 「한국전력공사법」6. 「주민등록법」
- 제32조(개인신용정보의 제공, 활용에 대한 동의) ① 신용정보제공, 이용자가 개인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 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- ⑥ 신용정보회사등(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)이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- 1.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 ·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
  - 10.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
-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 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 거나 공시할 수 있다.

#### <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>

**제19조(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)**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-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"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. 이 경우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는 공공기관 (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  - 1.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<mark>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</mark> 납부 정보
  - 2.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<mark>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</mark>
  - \*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4조(공공단체의 범위)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"의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.
    - < 별표5 > 5. 「한국전력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전력공사
      - 12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공단
      - 1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
제28조(개인신용정보의 제공·활용에 대한 동의)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 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.

#### <별표 2의2>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

제공의 이유	알리거나 공시하는 자	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	알리거나 공시하는 방 법		
16. 법 제32조제6항	개인신용	다음 각 목의 구분에	다음 각 목의 구분에		
제10호에 따른 다	정보를 제	따른 기한	따른 방법. 다만, 개인		
른 법률에 따라	공하는 자	가. 개인신용정보	신용정보의 제공의 근		
제공하는 경우		제공의 근거가	거가 되는 법률에서 알		
		되는 법률에서	리거나 공시하는 방법		
		정하는 바가 없	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		
		는 경우: 개인신	는 그에 따른다.		
		용정보를 제공하	가. ~ 나. (생 략)		
		기 전까지			
		나. ~ 다. (생 략)			

### 국민연금 성실납부와 불량률 간 상관관계 분석

국민연금 가입자 235만 명 대상 성실납부 개월수 및 불량률(12개월내 90일 이상 연체 발생)을 분석한 결과, 성실납부자의 불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점 부여가 가능한 것을 확인(복지부·금융위·국민연금·KCB, '20.7월)

#### 분석 결과 - 성실납부자 특징

- 성실납부 여부 및 개월수 별 금융활동 양상 분석
  - ㅇ집단간 신용정보항목 평균 / 분포 비교
- 상대적으로 성실납부자들의 금융거래가 활발하고 건전한 금융활동을 보임
  - o 대출 건수 및 카드이용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연체경험율은 낮게 나타남 - 금융활동은 더욱 활발하지만 리스크가 낮음
- →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

비고	성실납부여부					
	비성실	성실	성실개월수			
			3년미만	3년이상		
연체경험율	18.4%	11.6%	15.1%	9.5%		
대출건수	1.29	1.56	1.35	1.64		
신용카드이용금액	911만원	1,794만원	1,078만원	2,067만원		

#### 분석 결과 - 가점 확대 가능성 검토

- 성실납부 여부 및 개월수에 따른 불량률 분포 비교
  - o 집단간 신용등급별 불량률 분포 산출 / 비교분석
- 성실납부자의 경우 불량률이 동일 평점구간 내 전체고객에 비해 낮음
  - 뿐만 아니라 성실납부 개월수에 따라서도 불량률이 차이를 보임
  - →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 부여가 가능하며,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임

성실납부 여부에 따른 등급별 불량률

성실납부 개월수에 따른 등급별 불량률





평점구간	1~11개월	12~17개월	18~24개월	24~35개월	36개월이상
1~3	0.11%	0.08%	0.07%	0.07%	0.05%
4~6	1.04%	0.94%	0.83%	0.94%	0.79%
7~9	16.4%	13.9%	13.1%	12.7%	12.7%
건체	2.66%	1.94%	1.65%	1.51%	0.91%